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운영회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0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
발 의 자 : 운영회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, 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계획수립과 지원 대상(안 제3조, 제4조).
- 다. 운영 및 운영자 모집(안 제5조, 제6조).
- 라.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9. 5. ~ 9. 1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2. “급식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제3조에 따라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급식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이 경로식당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재가노인복지시설, 종교단체, 그 밖에 비영리 법인·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.
4. “급식장소”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계획수립)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

2.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) 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, 생활상태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

2. 도시락 지원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자 모집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·법인이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
 2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
 3.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
 4.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 등
-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운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점검)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

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시행 2023. 11. 17.] [법률 제19646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2. 30.>
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10. “차상위계층”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5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56호, 2021. 5. 13., 제정]

제4조(지원내용) ③ 제3조제3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3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52호, 2021. 3. 18., 제정]

제7조(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)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건강증진 지원사업

6.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